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정기예금』 요약 상품설명서

[기본정보]

(2025.09.01 현재, 세전)

구 분	내 용					
상품특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시행에 따라 만기시 자동재예치 되는 ISA편입용 정기예금					
상품유형	정기예금					
가입대상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취급 금융기관					
계약기간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가입금액	1만원 이상					
기본금리	(2025.09.01 현재, 세전)					
	구분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금리	연2.10%	연2.22%	연2.39%	연2.11%	연2.11%
예금자보호여부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유의사항]

※ 반드시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 (1599-1111,0,1)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거래제한	- 통장 발행 불가 -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불가										
이자계산방법	가입금액에 예치기간을 산정하여 약정금리로 계산하여 지급 (단위: 연, %)										
중도해지금리	<table><tr><th>기간</th><th>중도해지금리</th></tr><tr><td>1개월 미만</td><td>연 0.10%</td></tr><tr><td>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td><td>연 0.15%</td></tr><tr><td>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td><td>연 0.20%</td></tr><tr><td>6개월 이상</td><td>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x 차등율^(주1) x 경과율^(주2) (단, 연 0.20% 미만 시 연0.20% 적용)</td></tr></table> (주1) 차등율: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을 참고 6개월 이상~9개월 미만 경과 시: 60%적용, 9개월 이상~11개월 미만 경과 시: 70%적용, 11개월이상 경과 시: 90% 적용 (주2) 경과율: 경과일수 / 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로 산출 시 1.564%로 적용	기간	중도해지금리	1개월 미만	연 0.10%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연 0.15%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연 0.20%	6개월 이상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x 차등율 ^(주1) x 경과율 ^(주2) (단, 연 0.20% 미만 시 연0.20% 적용)
기간	중도해지금리										
1개월 미만	연 0.10%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연 0.15%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연 0.20%										
6개월 이상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x 차등율 ^(주1) x 경과율 ^(주2) (단, 연 0.20% 미만 시 연0.20% 적용)										
만기 후 금리	해당사항없음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시 불필요한 계좌를 정리할 수 있으며, 휴면계좌통합조회서비스 이용시 휴면계좌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정기예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예금상품의 주요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는 경우(예시:유선가입시는 녹취 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등),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정기예금』
- 상품특징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시행에 따라 만기 시 자동재예치 되는 ISA편입용 정기예금입니다.

2 거래 조건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증서)이나 계약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

(2025.09.01 현재, 세전)

구 분	내 용																												
가 입 대 상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취급 금융기관			상 품 유 형	정기예금																								
계 약 기 간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가 입 금 액	1만원 이상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 시 이자를 지급																												
자동 재예치	이 예금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을 최초가입기간 단위로 자동 재예치 - 자동 재예치 시 재예치 신규일은 종전 예금의 만기일 - 원리금 전액 재예치																												
기본금리	구분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금리	연2.10%	연2.22%	연2.39%	연2.11%	연2.11%																							
중도해지금리	가입금액에 대하여 신규일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중도해지금리로 계산(원미만 절사)																												
	기간		중도해지금리																										
	1개월 미만		연 0.10%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연 0.15%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연 0.20%																										
	6개월 이상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x 차등율 ^(주1) x 경과율 ^(주2) (단, 연 0.20% 미만 시 연 0.20% 적용) (단위:연,%)																										
	(주1) 차등율 : 기간(6개월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을 참고 6개월 이상~9개월 미만 경과 시: 60% 적용, 9개월 이상~11개월 미만 경과 시: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 시: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 / 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로 산출 시 1.564%로 적용																												
약정이율 <table><tr><th>구분</th><th>기간</th><th>금리</th></tr><tr><td>계약일</td><td>1개월 미만</td><td>연 0.10%</td></tr><tr><td>1개월</td><td>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td><td>연 0.15%</td></tr><tr><td>3개월</td><td>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td><td>연 0.20%</td></tr><tr><td>6개월</td><td>6개월 이상</td><td>기본금리 x 60% x 경과일수 / 계약일수</td></tr><tr><td>9개월</td><td>6개월 이상</td><td>기본금리 x 70% x 경과일수 / 계약일수</td></tr><tr><td>11개월</td><td>6개월 이상</td><td>기본금리 x 90% x 경과일수 / 계약일수</td></tr><tr><td>만기일</td><td>6개월 이상</td><td>기본금리 x 90% x 경과일수 / 계약일수</td></tr></table>						구분	기간	금리	계약일	1개월 미만	연 0.10%	1개월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연 0.15%	3개월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연 0.20%	6개월	6개월 이상	기본금리 x 60% x 경과일수 / 계약일수	9개월	6개월 이상	기본금리 x 70% x 경과일수 / 계약일수	11개월	6개월 이상	기본금리 x 90% x 경과일수 / 계약일수	만기일	6개월 이상	기본금리 x 90% x 경과일수 / 계약일수
구분	기간	금리																											
계약일	1개월 미만	연 0.10%																											
1개월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연 0.15%																											
3개월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연 0.20%																											
6개월	6개월 이상	기본금리 x 60% x 경과일수 / 계약일수																											
9개월	6개월 이상	기본금리 x 70% x 경과일수 / 계약일수																											
11개월	6개월 이상	기본금리 x 90% x 경과일수 / 계약일수																											
만기일	6개월 이상	기본금리 x 90% x 경과일수 / 계약일수																											

특별중도해지	▶ 아래 사유에 의한 해지 시에는 예금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서 고시한 특별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하되, 제3호에서 제 7호의 사유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해지 전 6개월 이내 발생한 경우에 한함 ① 가입자 사망 ② 해외이주 ③ 천재지변 ④ 퇴직 ⑤ 사업장의 폐업 ⑥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⑦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⑧ 의무기간이 3년인 경우 의무가입기간 경과 후 해지 ⑨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만기일 도래에 따른 해지 ⑩ 신탁보수 취득 ▶ 특별중도해지 금리는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 이후 경과기간에 따라 적용하되, 위 사유 중 제10호에 의한 특별중도해지시에는 예금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 당시 기본금리를 적용 ① 경과기간 6개월 미만 : 가입당시 이 예금의 3개월제 기본금리 ② 경과기간 6개월 이상 1년 미만 : 가입당시 이 예금의 6개월제 기본금리 ③ 경과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가입당시 이 예금의 1년제 기본금리 ④ 경과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 : 가입당시 이 예금의 2년제 기본금리	
만기 후 금리	해당사항 없음	
일부 해지	만기일 이전 2회 까지 가능 (법적제한이 있는 경우 일부해지 불가) ※ 일부해지 후 잔액이 최저 가입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일부해지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합니다.	
거래제한	- 통장 발행 불가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가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	
연계·제휴서비스	해당사항 없음	
휴면예금 및 출연	- 예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가능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 (1599-1111,0,1), 고객의소리 (080-933-1111),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 (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여부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이 예금은 만기 후 금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 예금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시행에 따른 ISA편입용 정기예금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 제한 시행령 등 관련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예금은 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에서 개발한 금융상품입니다.상품문의는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1599-1111,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	설 명
압류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가압류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질권설정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출연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경과기간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